

11.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- 보육정책팀

사업목적		경제적으로 어려운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(셋째 이상) 교육비 지원하여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																		
사업개요	최초시행시기	2018년 1월																		
	예 산 액	(단위:천원)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계</td><td>본청</td><td>만안</td><td>동안</td></tr><tr><td>예산액</td><td>344,160</td><td>134,400</td><td>90,360</td><td>119,400</td></tr></table>					구분	계	본청	만안	동안	예산액	344,160	134,400	90,360	119,400				
구분	계	본청	만안	동안																
예산액	344,160	134,400	90,360	119,400																
지원기준	사업기간	연중																		
	지원대상	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이하(보육나이 기준)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※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, 부모 중 1명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※ 단, 외국인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/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은 지원가능 [법정저소득 아동 기준]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④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 3~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(가정,성폭력),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(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) ⑥ 모·부자(일시)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(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)																		
	지원금액	[보육나이 4~5세('20~'21년생)] ○ 특별활동비·현장학습비: 최대 분기별 60천원 (적용기간: 2026년 3월~2027년 2월) [보육나이 0~3세('22~'26년생)] ○ 특별활동비 : 최대 월 60천원 ○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0천원 ※ 대상 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납부 금액 지원(최대 지원한도액 초과 불가) ※ 2025년 하반기부터 유아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'무상보육 지원' 도비보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은 지자체 필요경비 신청 시 최대 분기별 60천원만 신청 가능																		
	지원시기	분기별 신청 및 지급																		
	지원방식 및 절차	○ 어린이집에 필요경비 납부 및 신청서류 제출(부모) → 업무연락을 통해 시. 구청에 신청(어린이집, 분기별 신청 → 신청서류 검토 및 지급(시. 구청) → 부모통장에 지급(분기별/월 30일)) <table><tr><td>필요경비 납부 (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)</td><td>⇒</td><td>신 청</td><td>⇒</td><td>승 인</td><td>⇒</td><td>지 급</td></tr><tr><td>부모 [어린이집에 선납 및 신청서류 제출]</td><td></td><td>어린이집 [업무연락을 통해 시. 구청에 신청] (분기별)</td><td></td><td>시.구청 [신청서류 검토 후 승인]</td><td></td><td>시.구청→부모 [부모통장에 지급] (분기별)</td></tr></table> * 예시) 관내 A어린이집(3월~5월분) 시 ☞ 6.1~15일 업무연락 통해 신청 관내 A어린이집(6월~8월분) 시 ☞ 9.1~15일 업무연락 통해 신청 관내 A어린이집(9월~11월분) 시 ☞ 11월 말 업무연락 통해 신청 관내 A어린이집(12월~2월분) 시 ☞ 3.1~15일 업무연락 통해 신청 (●졸업생 확인후 2월중으로 신청받기) ○ 유의사항 : 어린이집 안내 미실시에 따른 신청 누락 건에 대해 1분기에 한하여 소급지원 가능 (2분기 이상 소급 불가)					필요경비 납부 (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)	⇒	신 청	⇒	승 인	⇒	지 급	부모 [어린이집에 선납 및 신청서류 제출]		어린이집 [업무연락을 통해 시. 구청에 신청] (분기별)		시.구청 [신청서류 검토 후 승인]		시.구청→부모 [부모통장에 지급] (분기별)
	필요경비 납부 (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)	⇒	신 청	⇒	승 인	⇒	지 급													
부모 [어린이집에 선납 및 신청서류 제출]		어린이집 [업무연락을 통해 시. 구청에 신청] (분기별)		시.구청 [신청서류 검토 후 승인]		시.구청→부모 [부모통장에 지급] (분기별)														
지급기준	○ 어린이집 재원 중 법정저소득 자격 취득 시 법정저소득 자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○ 필요경비 지원 대상 아동이 소득이나 재산변동 등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당 결정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○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필요경비는 월 기준으로 지원 -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월부터 지급 - 당월 퇴소아동은 퇴소월까지 지급 - 동일한 달에 관내 어린이집으로 입·퇴소 경우, 입소한 어린이집에서 당월분 신청 예시) 관내 A어린이집(퇴소 3.10) → 관내 B어린이집(입소 3.11) ☞ B어린이집에서 3월분 신청(A어린이집 납부 영수증 포함하여 신청 가능) ○ 둘째,셋째가 쌍둥이인 경우, 둘 중 한명만 신청가능 ○ 재혼한 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셋째아 여부 확인 후 지원																			
	제출서류	필요경비 지원 신청서(연1회), 통장사본(연1회), 신청자 서명부,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(자격 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)																		
	유의사항	○ 관외 아동에 대한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신청사례 없도록 유의																		
기타		[보육나이 5세(2019년생)] ○ 특별활동비·현장학습비: 최대 분기별 60천원 (적용기간: 2026년 1월~2026년 2월)																		